

2026 꿈의 오케스트라 '서천'

오픈 워크숍 참여자 모집 공고

(재)서천문화관광재단에서는 아동·청소년과 함께 시각예술 활동을 미리 경험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참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「꿈의 스튜디오 '서천」 오픈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2일

(재)서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※ 꿈의 스튜디오란?

꿈의 스튜디오는 아동·청소년이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시각예술 활동을 탐색하고 실험하며, 자신만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창작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은 물론 자기표현력과 사회적 성장을 함께 이루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.

1 모집 대상 및 인원

○ 모집대상: 서천군 거주, 소재 초등학교 2학년~고등학교1학년(2026년 기준)

※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포함

○ 모집인원

구분	모집교육	모집인원	비고
총인원		30명	
	경계없이 그림이 태어나는 곳 (회화)	10명	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 인근 참여자 우선 모집 ※ 자차 이동 가능 시 다른 지역 신청 가능
	흙손 예술 놀이터 (도예)	10명	
	흙빛 마음 공방 (공예)	10명	

2 운영 일정

○ 세부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서류 접수	2026. 5. 26.(화) ~ 6. 5.(금)	
서류 검토	2026. 6. 6.(토) ~ 6. 7.(일)	· 서류 적정성 자체 검토 ※ 서류 미비시 참여 불가
결과발표	2026 6. 8.(월)	· 교육 참여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

3 운영 개요

- 운영기간: 2026. 6. 10.(수) ~ 6. 11.(목)
- 운영일시: 16:00~18:00 / 2시간
- 교육장소: 예술가 작업실
- 지원사항: 교육비, 통학 차량 등 일체 무료

교육	일시	장소
흙손 예술 놀이터 (도예)	6. 10.(수) 16:00 ~ 18:00	서면 월하성길 35-3
경계없이 그림이 태어나는 곳 (회화)	6. 11.(목) 16:00 ~ 18:00	군청로 40번길 9
흙빛 마음 공방 (공예)		군청로 53-1

4 제출 서류

구분	세부내용	비고	
필수서류	① 오픈 워크숍 지원신청서 1부[서식1]	별첨 지정서식 사용	서식 변형 불가
	② 초상권 이용 승낙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[서식2]		
	③ 보호자 동의서 1부[서식3]		
	④ 주민등록등본 1부	서천군 거주 여부 확인	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
증빙서류 (해당자)	⑤ 사회취약계층 해당자 증빙서류 1부	[참고1] 취약계층 범주 확인	취약계층 우선선발 예정

※서류발급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(보건복지콜센터 ☎129) 또는 복지포(www.bokjiro.go.kr) 참고

5 접수 방법

- 이메일 접수: rin0122@seocheonctf.or.kr
- 방문 접수: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56번길 17 2층
- 유의사항
 - 마감일 17:00 도착분까지만 유효(도착시간 기준)
 - 마감일 19:00까지 접수 완료 문자 발송 예정, 해당 기한 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유선 확인 필수

6 유의사항

- 오픈 워크숍 참여 여부는 향후 「2026 꿈의 스튜디오」 본 프로그램 참여 선정과는 무관하며, 본 프로그램은 별도 모집 및 선발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.
- 본 사업은 모집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신청서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 관심도 및 참여 대상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며,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우선 선발 기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선발할 예정입니다.
- 신청서는 1인 1회 제출만 가능하며, 중복 신청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차량 운행은 신청서에 사전 작성한 승·하차 장소를 기준으로 운영되며, 참여 아동·청소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보호자의 협조와 지도가 필요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서류는 일괄 제출 원칙이며,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,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모집에 관한 사항이 무효가 되며, 선발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서천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(041-957-903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참고 1] 취약계층 범주

순번	구분	증빙서류
1	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	수급자증명서
2	차상위계층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3	조손 가정의 자녀	가족관계증명서
4	소년·소녀 가장	가족관계증명서
5	다문화 가정의 자녀	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
6	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	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
7	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	한부모가족증명서
8	도서벽지 거주자	재학증명서
9	장애아동, 장애인의 자녀	장애인 증명서
10	다자녀 가정의 자녀	가족관계증명서
11	보훈자의 자녀	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
12	특수교육대상자	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
13	아동복지시설 재원자	재원확인 증명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14	학교장 추천자	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
15	학교 밖 청소년	제적증명서, 미진학사실확인서, 정원외관리증명서, 검정고시 수험표 중 택 1
16	느린학습자 (경계선 지능 아동)	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 70-79점이거나 DSM-IV(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) 기준 71~84점(표준편차 -1과 -2사이)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심리학적평가보고서, 진단서 등)

[참고 2]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 사항

구분	비고																
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- '수급권자'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※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/정부24 발급 가능 																
차상위계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-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("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"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) ※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/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인가구</th> <th>2인가구</th> <th>3인가구</th> <th>4인가구</th> <th>5인가구</th> <th>6인가구</th> <th>7인가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준중위소득(50%)</td> <td>1,282,119</td> <td>2,136,613</td> <td>2,761,282</td> <td>3,247,369</td> <td>3,685,614</td> <td>4,098,907</td> <td>4,512,19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	기준중위소득(50%)	1,282,119	2,136,613	2,761,282	3,247,369	3,685,614	4,098,907	4,512,199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										
기준중위소득(50%)	1,282,119	2,136,613	2,761,282	3,247,369	3,685,614	4,098,907	4,512,199										
조손 가정의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																
소년·소녀 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 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 																
다문화 가정의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- 결혼이민자(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)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(단,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(모)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) -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																
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- '북한이탈주민'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																
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부모 가족 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- '한부모가족'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,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,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※ 일반 모자가족(모가 세대주) 또는 부자가족(부가 세대주)과는 구분 필요 																
도서벽지 거주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·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- '도서·벽지'란 지리적·경제적·문화적·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, 산간지역/낙도/수복지구/접적지구/광산지구를 말함 																
장애인의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																
다자녀 가정의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다자녀 가정(2자녀 이상) 자녀」 																
보훈자의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지원대상자 외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※ 교육지원대상자 외 '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' 제출자 																
특수교육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-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- 시각장애 / 청각장애 / 정신지체 / 지체장애 / 정서·행동장애 / 자폐성장애(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) / 의사소통장애 / 학습장애 / 건강장애 / 발달지체 /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																
아동복지시설 재원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- '아동복지시설'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																
학교장 추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 장이 판단·추천한 자 ※ 기관별 5명 이하까지 가능 -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(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) -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- 부양의무자의 질병·사고·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,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-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·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																
학교 밖 청소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-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-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-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																
경계선 지능 아동·청소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 70-79점이거나 DSM-IV(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) 기준 71~84점(표준편차 -1과 -2사이)에 해당하며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업능력, 정서적 어려움,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·청소년 																